

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병윤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
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2728호
「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☐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(국내 65세 인구 20%이상)에 진입한 상황
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요구되는 반면에, 건설기계조종사
에 대해 불필요한 연령제한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연

령제한에 따른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,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금지 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구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☐ 이에 제2728호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,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연령제한 해소를 위한 정책에 협조할 수 있고, 일률적 연령제한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
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